

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(안)

서울시 “원전하나 줄이기” 시책 지원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다 음 -

1. 개정근기

- 서울시 「태양광발전시설 융자지원 관련 업무 협조요청」
(녹색에너지과-19243, 2015.09.23.)

2. 주요 개정내용 : 세부내용 <붙임1> 참조

- 보증한도 사정방법 및 상환방법 변경

구 분	현 행	개 정
보증한도 사정방법	설치소요자금의 70% 이내	설치소요자금의 80% 이내
상환방법	8년균등분할상환	8년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

3. 시행일 : 2015. 12. 7.(접수일 기준)

4. 기타사항

- 가. 본 특별보증에 대한 상담은 지점에서 진행하되, 심사는 보증지원부 심사팀에서 전담하도록 함.
- 나.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대출금리 : 연 1.75% ('15년 현재)
- 다. 대출과목 : (서울시 기후변화기금) **기업시설기타금융대출**
(금융기관 일반자금) **기업시설분할상환대출**

- 붙임 : 1.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2.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前 전문 1부.
3. 「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특별보증」 취급기준 개정後 전문 1부. 끝.

★차장

팀장

부장

이사

협조자 전략기획실장

시행 보증지원부-620 (2015.12.04.) 접수 ()
우 121-70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(공덕동) / <http://www.seoulshinbo.co.kr>
전화 02)2174-5215 /전송 02)3278-8117 / cyj815@seoulshinbo.co.kr / 공개